한국체육대학교전기안전관리규정

제정 1990. 9. 14. (규칙 제 87호) 제1차 변경 1995. 10. 11. (규칙 제165호)

제1장 총 칙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"대학교"이라 한다)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키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의무) 본 대학교의 전기시설물을 이용시 전기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 3 조(규정의 개정 또는 세칙의 제정, 개정) 이 규정의 개정 또는 전항에 정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결정한다.

제 2 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

- 제 4 조(안전관리업무의 감독) ①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총장이 총괄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전실에 배치하여 그 감독에 임하도록 한다.
 - ②전기안전 관리자의 안전감독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 - 2. 전기설비의 보수에 관한 사항
 - 3.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
 - 4. 화재(전기분야)예방 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
 - 5. 안전관리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
 - 6. 안전관리용 기재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
 - ③전기안전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 5 조(설치자의 의무) ①전기설비에 관한 전기안전 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수행하고 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②전기안전 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③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계될 때에는 전기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④법령에 의한 관할 관청의 검사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.
- 제 6 조(교직원의 업무)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제 7 조(전기안전 관리자의 부재시 조치) 전기안전 관리자가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(이하 "대무자"라 한다)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
- 제 8 조(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) 전기안전 관리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
 - 1. 전기안전 관리자가 질병으로 장기 결근하거나 정신 장애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 - 2. 전기안전 관리자가 명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때
 - 3.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담당자가 승진, 전임, 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.

제 3 장 안전관리 교육

- 제 9 조(안전관리 교육) 전기안전 관리자는 교직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안전에 관한 훈련)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재해 기타 전기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실시지도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공사 계획과 실시

- **제11조**(공사계획) ①전기설비의 설치, 개조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②전기안전 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중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(이하 "보수공사"라 한다) 계획을 입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2조(공사실시) ①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 야 한다.
 - ②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 청부시킬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된

경우에는 전기안전 관리자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 수

- 제13조(순시점검 측정) ①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전기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순시 점검 또는 측정결과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불합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개조 단전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행하여 항상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**(사고재발방지) 사고 기타 이상 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 정밀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을 규정하여 재발방지에 유감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운전과 대책

- 제15조(운전조작등) ①전기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기타 이상시에 대한 차단기 개폐기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.
 - ②전기안전관리자 혹은 교직원은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미리 정하여 둔 사고 경중의 구분에 따라 관계처에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③전항의 연락 혹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수전실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두어야한다.
 - ④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관계 전기 사업자 사업소와의 연락하에 행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재해 대책

- 제16조(방재 체제) ①비상재해나 기타 재해를 당함에 있어 전기설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.
 - ②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하여야한다.
 -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할 수가 있다.

제 8 장 기 록

- 제17조(기록) ①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1. 순시점검 측정기록
 - 2. 전기사고기록
 - 3. 운전일지.
 - ②주요전기 기기의 보수 기록은 법령에 정한 설비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2년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 9 장 책임의 한계

- 제18조(책임의 한계점)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상의 책임한계점은 재 산상의 책임한계가 되는 수전실과 입구의 전원측 단자로 한다.
- 제19조(구내 주요설비) 주요 설비의 구매는 별도로 정한 것으로 한다.

제 10 장 정비 및 기타

- 제20조(위험표시) 수전실 기타 고압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주의 환기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측정기기류의 정비) 전기설비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를 정비하고 이를 관리부에 적정하게 보완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) 전기설비물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관리부에 3년간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수속서류등의 정비) 관계 관청 전기사업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관리부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 (1990. 9. 14. 제 8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10. 11. 제16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